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법령과 상충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용어 등 정비(안 제2조)
- 나. 시민의 책무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다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)
 - 당초 :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→ 변경 :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
- 라.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조례위임사항 규정(안 제8조)
- 마. 시민공용자전거 사고에 대한 이용자 책임 규정 삭제(안 제13조)
- 바. 민간 자전거 교육·정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삭제(안 제16조)
- 사.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조직,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1조, 제2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민공용자전거”란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.
2. “시민공용자전거 대여소”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용자전거를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
2.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전거 이용시책에 관한 구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참여와 협력

에 관한 사항

5. 자전거 이용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제4조(시민의 권리)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2.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
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

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
2.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개선기준의 설정)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전담부서의 설치)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

제8조(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항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.

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, 기차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건물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자, 각급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)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「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제10조(자전거 주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) ① 자전거 주차시설은 해당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.

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·동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일체를 위임할 수 있다.

③ 자전거 주차시설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)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시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.

제4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

제12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2.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·국외 행사, 대회 및 사업 지원

③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.

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3조(시민공용자전거의 운영)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공용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민공용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1. 시민은 누구나 시민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.
2.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.
3. 시민공용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.
4.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공용자전거 전용주차시설에 거치해야 한다.
5. 시민공용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용자전거 관리·운영을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지역(이하 “시범지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(이하 “시범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시범기관의 장은 시범지역 내 지역주민, 소속직원, 근로자, 학생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·운영)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“자전거 이용의 날”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자전거 운행교육 등)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.

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전거 보험) 시장은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시민이 금전적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

2.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.

제5장 위원회의 설치 등

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1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한다.

1.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2.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3.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 의견 시책반영 사항
4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,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2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자전거 업무 담당국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구미시의회의원 2명
2. 유관기관 공무원(구미시교육청, 구미경찰서)
3. 자전거 이용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대표
4.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
2.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
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자전거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.

제26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장 보칙

제2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시설·보관소·정비소·대여소·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등에 관한 시설 관리·운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항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생략

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·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
2. 연도별 활성화계획
3.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~ ⑤ 생략

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생략

③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「주택법」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

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19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활성화계획의 반영)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(이하 "이용활성화사업"이라 한다)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
2.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
3. 철도역·도시철도역·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
4. 통학로·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
5.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
6.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
7.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
8.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
9.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

제7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)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(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)의 100분의 5로 한다.
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.

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[별표]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(영 제7조제2항 관련)

1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-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
 -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
 -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(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)
2.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: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3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
 - 가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시설물
 - 나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(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 - 다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
 - 라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
 - 마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시설물(위락시설 중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,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·다세대주택과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)

비고: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소관 실 · 과		환경안전과
입 안 자	과 장	문 경 원
	담 당	조 영 조
	담 당 자	이 정 희 (480-5290)